

이사회규정

제정	2001년	4월	2일
개정	2003년	3월	10일
개정	2004년	3월	17일
개정	2006년	3월	9일
개정	2010년	3월	19일
개정	2012년	3월	16일
개정	2014년	5월	23일

주식회사 엘지화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G화학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고만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장 구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2. 기타 비상무이사
 3. 사외이사

제6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7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며,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 중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순서를 준용한다.

제8조 (소집)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인 되도록 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되도록 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 제5항에 따르고, 본 규정을 준용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4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영업전부의 양수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의 양수
- 주식배당
- 자본감소
- 주식의 소각
- 정관변경안
- 이사의 보수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안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총 보고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별첨 참조)

- 자산재평가
- 중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출자
-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의 취득·처분·자금의 차입·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련 사항

-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6.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7. CSR 관련 추진 방향 및 주요 이행사항

8.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사무국)

이사회는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집행임원

제18조 (집행임원)

-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 (상무회)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상무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첨) 이사회 상정기준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구 분	유 형	상정 기준
시설투자	신규및 증설 투자	건당 1,000 억원 이상
출자	출자 및 타회사 주식 취득	건당 금액이 자본금의 5%이상 이거나 200 억원 이상
자산의 취득	시설투자 및 출자를 제외한 자산취득	건당 1,000 억원 이상
자산의 처분	주식의 매각	건당 금액이 자본금의 5%이상 이거나 200 억원 이상
	자산 및 영업의 일부양도	건당 1,000 억원 이상
자금의 차입	한도거래외 일반 차입	차입건당 2,000 억원 이상의 장기 차입금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자회사 및 기타회사	건당 500 억원 이상